

[1] 법정 목표율 준수

- 비과세·감면율을 법정 목표 내로 엄격히 관리하여 지방세 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
- 장기·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을 및 효과 등을 분석해 정비 추진, 감면대상·목적의 구체화·세분화를 통한 과도한 감면 배제
 - ※ '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' 등 추상적·포괄적 목적 규정 정비

[2]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 재설계

※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조의2

- 지방세 지출이 지역 민생경제,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고려
-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상, 목적 등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
 - ※ 단, 유사한 경우에도 조세부담능력, 공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화 가능
- 국민개세주의,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**최소납부세제*** 적용
 - * 취득세액 200만원·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% 부담

[3] 지출 성격과 세목 간 연계성 강화

- 확산·촉진 정책과 보호·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적정 세목 선택
- 특정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성격 세목 및 행정수수료적 성격인 등록면허세의 감면 종료·신설 배제

[4] 일몰 원칙 적용 및 감면 조례 활성화

-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일몰 3년 부여 원칙* 운영
 - * 단, 유사 감면대상 간 일몰기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1~2년 가능
- 지역별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정 감면 사항에 대해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
 - ※ 특정 지역의 특성 반영이 필요한 지출은 조례를 통한 감면 활용